

F 건설업(41 ~ 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공원 및 정원 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관리활동(74300)

나.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에 직접 관련된 시굴 및 건설활동(08000)

다. 조립식 건물 구성 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 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라. 건축 설계, 감리, 기획, 조사, 측량 및 기타 건축공학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분류하나, 건축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체가 건설할 건축물을 직접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건설업에 분류

마.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농지, 공장용지, 광산용지 등)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681)

41 **종합 건설업**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토목 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건설업 부문을 나타낸다. 택지, 공장용지 등 지반 조성공사 및 토목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토목 건설업과 건물 건설업이 함께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411 **건물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제 외>

-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6812)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1111 **단독 주택 건설업**

주거용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단독 주택 및 다중 주택 건설
- 다가구 주택(3층 이하, 660㎡ 이하) 건설

<제 외>

- 직접 건설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68111)

41112 아파트 건설업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아파트 건설
- 주상 복합 아파트 건설

41119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등 아파트 이외의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연립 주택(4층 이하, 660㎡ 초과) 건설
- 다세대 주택(4층 이하, 660㎡ 이하) 건설

4112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사무 및 상업용 건물, 제조업 및 기타 산업용 건물 등의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1121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사무, 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교육·연구시설 및 의료시설용 건물 건설
- 상점 및 쇼핑센터 건설
- 호텔, 기숙사, 군인 막사 등 숙박시설, 각종 오락 및 상업시설용 건물 건설
- 경찰서 및 소방서 건설
- 오피스텔 건설

<제 외>

- 일반 창고 건설(41129)
- 특정용 창고(격납고 등) 건설(41129)
- 옥외 수영장 및 관련 탈의실 건설(41229)

41122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각종 제조 공장 및 유사 산업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 건설공사와 함께 생산시설용 기계 및 설비의 부분적인 설치공사가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 공업용 건물 건설
- 광산용 건물 건설
- 화학산업용 건물 건설
- 발전소용 건물 건설

<제 외>

-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과 함께 기계·설비류, 구조물 등의 설치를 병행하는 경우(41225)

41129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각종 유형의 창고, 주차시설, 운송 터미널, 실내 경기장 등 기타 용도의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일반 창고, 냉동 및 냉장 창고, 특정용 창고 건물 건설
- 여객 및 화물 터미널 건설
- 주유소 건물 건설
- 차고시설 건설
- 박물관 및 유사 건물 건설
- 동물원용 건물 건설
- 운수관련 건물 건설

- 화학물 및 저유소 건물 건설
- 공항 건물 건설
- 실내 경기장 건설

412 토목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교량, 터널, 댐 등의 토목 공작물(건물 제외)을 설치하거나 택지, 공장부지, 광산용지, 농지 등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산업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수목원·공원·녹지·숲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토목건설 활동과정에서 전문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포장공사, 철도 궤도공사 등은 전문직별 공사업(42)으로 분류한다.

4121 지반조성 건설업

41210 지반조성 건설업

택지 조성공사, 공장부지 조성공사, 광산용지 개발 등의 건설부지 및 기타 용지를 개발·조성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부지 조성공사와 결합된 도로 및 관련 특수 구조물, 상·하수도, 가로등, 전기통신, 조경, 정보화 시설공사 등과 간척공사를 포함한다.

<제 외>

- 토공사(42121)
- 묘지 개발·공급업(96922)
- 토지 개발·공급업(6812)
-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건설활동(08000)

4122 토목 시설물 건설업

각종 도로, 교량, 고가 도로 및 지하철, 항만 및 수로, 산업 생산설비

등의 토목 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지반조성 건설업의 일부로써 수행되는 도로 건설(41210)

41221 도로 건설업

각종 도로, 공항 활주로, 인도 등의 도로 건설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도로 건설활동과 결합된 포장공사 및 도로 관련 구조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 도로공사
- 활주로공사
- 인도공사
- 보도공사
- 고속도로 건설

<제 외>

- 도로건설과 분리된 교량, 고가도로 및 지하도공사(41222)
- 도로건설과 분리된 도로선 표시공사(42411)
- 도로 포장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우(42134)
-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 콘크리트 포장공사(포장장비 미사용)(42132)

41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도로건설과 분리된 교량·터널·고가도로 건설 및 철도·지하철도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가 수로 건설이 수로공사와 분리될 경우에도 포함한다.

<예 시>

- 철교 건설
- 터널 및 유사 구축물 건설
- 수중 터널 공사
- 이동식 교량 건설

- 지하도 건설
- 출렁다리(줄다리) 건설

<제 외>

- 교량 및 철도 건설과 분리된 철 구조물 및 철도 궤도 부설 전문공사(4213)

41223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항만시설, 댐 및 저수시설, 관개 및 기타 용도의 수로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방파제 및 유사 구축물 건설
- 운하 및 유사 구축물 건설
- 항구 및 항만시설 건설
- 강 제방 및 유사 구조물 건설
- 부두, 잔교 및 유사 구조물 공사
- 저수지 개발 공사
- 하천·항만 등의 물 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한 준설 공사

<제 외>

- 조경용 인공호수(굴착) 건설(41226)
- 건축물 축조와 관련한 기초공사에 수반되는 배수로공사(42123)
- 부지조성 관련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 공사(41229)
- 송유관 등 관로(파이프라인) 설치 공사(41229)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인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 쓰레기처리 시설공사
-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 환경 오염방지 시설공사
- 분뇨처리 시설공사
- 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

<제 외>

- 관개 및 기타 용도의수로 건설공사(41223)
- 산업 생산설비를 종합적으로 건설하는 공사(41225)
- 건물용 환경 위생처리 기기 및 관련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42201)

41225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산업 생산시설,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생산시설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 생산 시설은 생산자가 목적으로 하는 원료, 에너지, 중간재, 최종 제품 등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와 장치, 관련 구조물, 건물이 결합된 단위 생산시설을 나타낸다.

<예 시>

- 화학공업설비 설치공사
- 발전설비 설치공사
- 화학 물질 처리설비 설치공사
- 광산설비 설치공사
- 도시가스 제조설비 설치공사

<제 외>

- 산업설비 설치용 건물 건설(4112)
- 산업 생산설비의 성격을 갖지 않는 특정한 산업용 기계장비의 조

- 설치하는 해당 기계의 제조활동으로 분류
- 산업 생산설비 성격을 갖지 않는 건물 설비용 단일 기계·장비를 전문 건설업자가 조립·설치하는 경우(422)

41226 조경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수목원, 공원, 녹지, 숲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또는 파종하거나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결합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 외부 환경 조성공사
- 조경 건설공사
- 정원 조성공사
- 녹지 조성공사

<제 외>

- 공원 및 정원 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관리 활동(74300)

41229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실외 경기장, 상·하수도 본관 및 관련 시설물, 관로(파이프라인) 등 각종 토목 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종합계획에 의한 공항 건설
- 주경기장(스타디움, stadium) 공사
- 야외 경기장 및 유사 오락시설 공사
- 종합적 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기반시설용 상·하수도 본관(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오수관), 농·공업용 수도관 공사
- 석유, 가스 등 관로(파이프라인) 공사
- 미사일 발사대 및 유사 군사용 구조물 설치 공사

대분류 F

- 철탑 건설(송진탑은 42311)
- 취수, 정수, 송·배수용 기기 설치공사
- 가스 충전시설, 집단 공급시설, 저장시설, 사용시설, 판매시설 설치공사

<제 외>

- 농지 개발 및 정지, 광산부지 조성 관련 공사(4121)

42 전문직별 공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토목시설 및 건물 건설과 관련한 특정 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 시설물 축조를 위한 기반 조성 공사, 축조와 관련된 특정 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211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토목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 건축물 해체관련 발파공사 · 건축물 철거공사
- 건축물 해체공사 · 구축물 철거공사

4212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와 관련하여 토공사, 파일공사 등 기반조성에 관련된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2121 토공사업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각종 공사를 위한 발파, 암석 제거, 굴착, 토사 운반, 땅 고르기, 절토, 성토, 비탈 보호, 물막이, 흙막이 및 관련 배수로 설치공사 등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공업용지 조성용 정지공사 · 사방공사

- 광산용지 조성관련 토공사
- 굴착, 흙 운반 및 땅 고르기공사
- 철도 도상 자갈공사
- 폐기물 매립지 굴착·선별·성토공사

<제 외>

- 건축물 축조 관련 굴착, 흙 운반, 배수로공사(42123)
- 택지 등 지반 조성공사(41210)
- 건물 축조관련 파일공사(42123)
- 묘지 개발 공급(96922)
- 위탁 및 자영으로 토지, 농지 등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판매(68129)

42122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활동과 관정, 우물 등을 굴착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
- 굴정공사
- 지하수 개발 공사
- 관정(관개용 우물)공사
- 우물공사

<제 외>

- 조경용 연못 건설(41226)

42123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축조에 관련되는 파일공사(항타기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축조용 대지 굴착 및 관련 흙 운반공사, 건축물 기초 공사관련 배수로공사

등의 축조관련 기초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파일공사 및 관련공사
- 축조관련 부지 기초공사 및 관련공사(대지 굴착, 흙 운반, 배수로공사 등)
- 축조 관련 기초공사와 결합된 콘크리트공사
- 건축부지, 농·임업용지 배수로 공사

<제 외>

- 건설용지, 농지, 광산용지 등 지반조성 관련공사(4121)
- 사방공사 등 토공사(42121)
- 철근공사 등 축조관련 전문공사(4213)

42129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토공사, 보링 및 그라우팅 공사, 파일공사 이외의 기타 기반조성과 관련된 전문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213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철골공사, 철근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조적 및 석축 공사, 포장 공사 등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와 관련된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중공사와 관련된 비계 및 형틀공사를 포함한다.

<제 외>

-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공사(42123)

42131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철골조 및 뼈대 등 관련 구조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철골공사
- 철강 구조물 조립, 설치공사
- 철탑, 철교 조립 및 설치공사
- 철골 용접공사
- 철제 수문 등 조립, 설치공사

<제 외>

- 토목공사와 병행하는 철탑, 철교 등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412)

42132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콘크리트공사, 철근공사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장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도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포함한다.

<예 시>

- 콘크리트공사
- 철근공사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공사(PSC)
- 포장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 콘크리트 포장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제 외>

- 축조 관련 기초공사와 결합된 콘크리트공사(42123)
- 벽면, 바닥의 회반죽 공사 및 미장공사(42491)

42133 조적 및 석공사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석조공사
- 벽돌 조적공사
- 석재 조적공사
- 인도·광장 등 석재 포장공사
- 굴뚝 공사
- 벽돌 구조재 설치공사
- 조립식 벽면 부착공사
- 콘크리트 블록 조적공사
- 판석 포장공사

<제 외>

- 벽면에 타일 및 대리석 부착, 테라조 및 모자이크공사(42491)

42134 포장 공사업

포장장비를 사용하여 역청 물질(아스팔트 등),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및 공항 등의 토목건설에 관련된 지면의 포장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아스팔트 포장공사
- 콘크리트 포장공사
- 포장장비를 사용한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 포장공사
- 과속 방지턱 설치공사
- 보도블럭, 경계석, 특수블럭 설치공사(석재 제외)
- 공항 활주로 포장공사

42135 철도 궤도 전문공사업

철도 및 지하철 건설에 관련된 철도 궤도의 부설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궤도공사, 궤도 용접공사
- 침목(목재, 콘크리트 침목) 설치공사
- 선로 차단공사

<제 외>

- 철도 건설업체가 철도 궤도의 부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41222)

42136 수중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수중 또는 해저 작업이 요구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수중 건축 공사
- 잠수 및 수중 공사
- 수중 암석 파쇄공사
- 수중 구조물 설치 및 해체 공사
- 계선 부표 및 부이 등 항로 표지 설치 공사

<제 외>

- 수중 터널 공사(41222)

42137 비계 및 형틀 공사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일반 비계공사, 발판 가설공사, 특수 중량물 설치공사, 콘크리트 형틀 설치공사, 기타 건축공사 보조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콘크리트 형틀(거푸집) 설치공사
- 발판 가설공사
- 특수 중량물(특수 구조물, 탱크 등 대형 조립물) 설치 및 이전 공사
- 건축공사 보조물 설치공사

<제 외>

-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결합 수행하는 형틀공사(42132)

42138 지붕, 내·외벽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지붕 및 판금 설치공사, 내벽·외벽·바닥 패널 조립공사, 천장·벽체·칸막이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각종 재료제(기와, 슬레이트, 금속, 아스팔트, PVC 등)의 지붕공사
- 지붕 단열, 장식 공사
- 판금 설치 공사
- 빗물받이 및 홈통 설치공사

<제 외>

- 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2201)
- 지붕 잇기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 도장공사(42411)

42139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건축물 공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조경 시설물 설치공사, 삭도공사, 옥외 안전·경계·방호·방음 시설물 축조와 관련한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조경 시설물(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야외 의자,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퍼즐러, 인조 잔디 등) 설치공사
- 삭도(케이블카, 리프트 등) 공사
- 가드레일, 표지판, 방호 울타리, 낙석 방지망·낙석 방지책, 방음벽, 방음 터널, 교량 안전 점검시설, 버스 승강대,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옥외 광고탑 등의 금속 구조물 설치 공사
- 철도기계 신호공사, 건널목 차단기 공사

<제 외>

- 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2201)
- 지붕 잇기 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 도장공사(42411)

- 철골, 철강재 구조물 설치공사(42131)

42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20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전기 및 통신 설비를 제외한 상수도, 하수도, 가스 배관시스템, 냉·난방시스템, 엘리베이터 등 건물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각종 건물 설비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일 설비가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건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배관, 냉·난방, 환기 등 공기 조절설비의 설치·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과 결합된 상수도, 하수시설 및 정화조 공사가 포함되나, 토목공사 성격을 갖는 하수관 및 하수 처리시설의 건설과 소방시설 성격의 배관공사는 제외한다.

<예 시>

- 보일러 공사
- 송풍관 건설 공사
- 화재방지용, 조경용 살수시설(스프링클러) 및 물펌프 설치 공사
- 보일러 연소기 설치공사
- 건물 하수시설 공사
- 배관공사와 결합된 판금, 용품, 기기 등 설치 공사
- 건축물 등 설치용 급·배수시설(급수관, 배수설비) 공사
- 요업용, 금속용 요로 설치 공사
- 온돌 설치공사
- 보온·보냉 등 열절연 공사
- 태핑(핫태핑, 콜드태핑) 공사
- 덕트 설치공사
- 건물 내부 가스설비 설치공사
- 환기시설 공사

<제 외>

- 배관공사와 분리된 합석 및 판금공사(42138)
- 냉장고, 룸에어콘 등 가정용 기기 수리(95)
- 토목성격의 상·하수도 배관공사(41229)
- 소방시설공사(42204)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의 본래 기능 수행을 위해 결합 설치되는 각종 기계 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물품 이동장치 설치공사 · 식품 이동장치 설치공사
- 집진기 설치공사 · 회전식 문 설치공사
- 엘리베이터, 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 자동 길(무빙워크) 설치공사
- 기계식 주차 설비공사
- 건물 기계설비 제어기기 설치공사
- 지능형 제어시스템·자동 원격 검침설비 등 자동 제어공사
- 시스템 에어컨(GHP, 가스엔진 냉·난방기) 설치 공사
- 시스템 에어컨(EHP, 전기엔진 냉·난방기) 설치 공사
- 피뢰침 등 낙뢰 방지설비 설치공사

<제 외>

- 토목공사 성격의 산업 설비공사(41225)
- 건물 내 배관 공사(42201)
- 건축물 관련 전기 공사(42312) 및 통신장비 설치공사(42322)
- 창호 설치공사(42420)

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건축물 축조와 관련하여 건물의 벽 및 천정 등에 방음, 방진 및 내화 물질을 주입 또는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방열 및 방음공사
- 방음 및 음향 조절공사
- 방진 공사

<제 외>

- 미장 및 방수공사(42491)
- 난방 배관공사(42201)

42204 소방시설 공사업

건축물 축조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옥외 소화전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예 시>

- 소화전 설치공사
- 건물 및 건축물 소방시설 공사
- 방화 셔터 설치공사

<제 외>

-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721)
- 일반 셔터 설치공사(42420)

42209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물 및 구조물 관련 부지 내 각종 설비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울타리(펜스, fence), 게양대 설치공사
- 철망 설치공사

- 옥외 모형 장식물 설치공사
- 풀장 설치공사
- 보도블록 깔기 공사(건축물 구내)
- 모래 깔기 공사(건축물 구내)

<제 외>

- 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2201)
- 지붕 잇기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 도장공사(42411)
- 철골, 철강재 구조물 설치공사(42131)
- 실외 수영경기장 건설업(41229)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토목 및 건축관련 전기 및 통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231 전기 공사업

전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2311 일반 전기 공사업

송·배전 설비공사, 송·배전선 설치공사 등과 같은 전기 관련 토목공사 성격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한 구조물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공사
- 가로 조명 시설공사
- 교통 통제용 전기 시설공사
- 송·배전탑 공사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건축물 내부의 전기 배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건물 전기 배선공사
- 도난 방지용 전기 설비공사
- 지능형 빌딩시스템(IBS) 전기설비 제어 및 감시 공사
-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전기설비 제어 및 감시 공사

4232 통신 공사업

통신 케이블 및 통신 배선공사, 통신 장비 및 전화 등의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통신 케이블 및 배선공사
- 전화 등 통신장비 설치공사
- 해저 케이블 공사

42321 일반 통신 공사업

통신 케이블 공사 및 통신선 관련 구조물 설치 등 토목공사의 성격을 가지는 통신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통신 케이블공사
- 통신탑 설치공사
- 해저 통신 케이블공사

42322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구내 정보통신(LAN) 공사
- 케이블 TV 접속공사
- 정보조직 관련 통신배선 설치공사

- 지능형 빌딩시스템(IBS) 통신설비 제어 및 감시 공사
- 원격자동검침(AMR) 통신설비 공사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241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건물 및 구조물의 도장공사, 건물 내부의 도배·실내 장식공사 및 내장 목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2411 도장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구축물 및 구조물 등의 도장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선박 도장공사
- 건물 내·외부 도장공사
- 교량 및 기타 구축물 도장공사
- 도로선 표시 도장(도로 건설활동과 분리된)공사
- 부식 방지용 도장공사

<제 외>

- 도로선 표시 도장(도로포장 활동과 결합된)공사(42134)
- 프레스코공사(42491)

42412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 벽면의 도배공사, 카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등 실내 장식공사, 내장 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벽지 부착공사
- 모노륨 등 바닥재 설치공사

- 마루 덮개공사
- 장판 설치공사
- 목세공공사
- 벽면 목공사
- 비닐장판 설치공사
- 목재 마루 깔기공사
- 목공물 부착공사
- 나무 및 금속 결합 실내 장식공사

<제 외>

- 문 및 창호 공사(42420)
- 형틀 목공사(42137)

4242 유리 및 창호 공사업

42420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각종 유리공사 및 창호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유리공사
- 창문 유리 설치공사
- 목재 창호 설치공사
- 금속 창호 설치공사
- 유리 끼우기 공사
- 플라스틱 창호 설치공사
- 새시 설치공사
- 일반 셔터 설치공사

<제 외>

- 회전문공사(42202)
- 회전문 또는 자동문 개폐장치 설치공사(42202)

4249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완성 또는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수행하는 기타 전문 건설 산업활동을 말한다.

42491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벽면 및 바닥의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타일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모자이크공사
- 미장, 타일, 방수공사 시공과 관련 건물 본체 및 설비 등과 일체화공사(태핑공사)
- 대리석 부착공사
- 프레스코공사
- 모래 분사 부착(취부)공사
- 타일 및 테라조 내장공사
- 회반죽 공사 및 관련 미장공사

<제 외>

- 블록, 벽돌, 석재 조적공사(42133)
- 지붕공사(42138)
- 방음공사(42203)
- 핫 태핑, 콜드 태핑공사(42201)

42492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을 완성 및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금속공작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금속제 장식용 아치 설치공사
- 장식용 금속 공작물 설치공사
- 금속제 발코니 설치공사
- 장식용 금속제 모형 설치공사
- 금속제 차광막 설치공사
- 철사다리, 철난간, 철계단 설치공사

<제 외>

- 금속 구조재 제조업체가 설치하는 경우(2511)
- 축조관련 울타리 설치 공사 및 철망공사(42209)

42499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축 마무리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건축물 외부 증기청소 공사
- 바닥 정리 및 청소 공사
- 비금속제 건물부착 공작물(차광발, 커튼고리, 커튼 등) 설치공사

425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4250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42500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시설물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직별 공사업무 내용으로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물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 이외 시설물 증설·확장공사,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 건설업종 중 1개 업종 업무 내용만으로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는 제외한다.

426 건설장비 운영업

4260 건설장비 운영업

42600 건설장비 운영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급 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계약 건설 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예 시>

-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 외>

- 운전자 없는 건설장비용 기계장비 임대(76310)